

건설동향브리핑

제520호 (2015. 7. 20)

■ 정책 · 이슈

-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 반대 54.6%
-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특별조치의 전향적 검토 필요

■ 경영 · 정보

- 2015년 OPEC 연간 통계 보고서 분석

■ 경제 동향

- 5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비 84.5% 증가

■ 연구원 소식

- **건설 논단** : 경제살리기 해법, 절박감이 없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 반대 54.6%

- 지자체별 발주자 대상 설문 결과, 전문건설업체의 관리 및 보증능력 미흡 등이 이유 -

■ 정부, 칸막이식 업역 유연화 취지하에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 검토¹⁾

- 일방향으로 영업범위 제한 폐지를 추구하는 것은 건설시장 구조에 미치는 부작용이 심각할 우려가 있음.
 - 종합건설업체의 10억원 미만 공사 계약금액은 13조 6,630억원(2013년)이며, 만약 소규모복합공사 범위가 10억원으로 확대될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수주가 가능해지는 비대칭적 시장 규모는 최대 2조 6,3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중소 종합건설업체의 10억원 이하 공사 수주액이 5조 5,419억원²⁾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시 중소건설업체에 심각한 외부충격이 예상됨.

■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 ‘반대 54.6%’, ‘찬성 8.4%’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243개 지자체 발주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43명이 응답하였음.
 - 이번 설문조사는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의 합리적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되었음.
- 소규모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 54.6%, 찬성 8.4%로 나타남.
 - 구체적인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적인 관리능력 부족(29.9%)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종합·전문으로 구분하는 현행 건설업 면허체계에 위배(23.4%), 전문건설업체의 기업규모나 보증능력 미흡(2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찬성하는 이유로는 응답자 수가 적어 통계적 신뢰성이 약하긴 하지만 건설업역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447호 참조. 개정 이유로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상향하여 건설공사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유연화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주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입법예고 일자 2015년 4월 10일).

2)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업조사(2013).

및 유연화 촉진, 전문건설업체의 제도적 육성, 다단계 하도급 축소 등으로 나타남.

<소규모복합공사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

구분	빈도 수(명)	비율(%)
반대	78	54.6
찬성	12	8.4
의견 없음	53	37.1
합계	143	100.0

■ 소규모복합공사 금액 기준 ‘3억원 미만’이 적정’ 64.7%

- 소규모복합공사 적용금액 수준에 대해서는 3억원 미만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6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1억원 미만 18.4%, 10억원 미만 5.9%의 순으로 나타남.
- 금액별 누적으로 검토하면 3억원 미만(5천만~3억원)으로 응답한 경우가 총 응답자 136명 중 120명으로 88.2%를 차지함.

<소규모복합공사 적정 금액 수준>

구분	빈도 수(명)	비율(%)	구분	빈도 수(명)	비율(%)
5천만원 미만 (무면허업체의 종합공사 도급가능 기준)	1	0.7	3억원 미만 전체	120	88.2
1억원 미만	25	18.4			
2억원 미만 (조달청의 종합공사 무실적 입찰 기준)	6	4.4			
3억원 미만 (현행 소규모 복합공사 기준)	88	64.7	3억원 이상 전체	15	11.0
5억원 미만	5	3.7			
7억원 미만	2	1.5			
10억원 미만	8	5.9			
기타(무응답)	1	0.7	기타(무응답)	1	0.7
합계	136	100.0	합계	136	100.0

-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시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공사 관리능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53.9%였으며, 불가능하다는 의견까지 합하면 61.0%를 차지함.
- 그리고 향후 등록제도 관련 사항으로 전문건설업체에서 소규모복합공사 입찰을 위한 1~2개 전문면허를 추가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57.8%였으며, 매우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까지 합하면 78.9%로 분석됨.

나경연(연구위원 · econa@cerik.re.kr)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특별조치의 전향적 검토 필요

-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에 대한 특별 조치 필요성 및 정책적 검토 과제 분석 -

■ 입찰담합 제재와 건설산업 여건

-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오는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 차원의 사면 필요성이 논의된 데 대해 건설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대상이나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근 대형 및 중견 건설업체의 다수가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어 그 기대가 큰 상황
- 지난 2010~11년 사이 지하철 등 토목공사 및 에너지, 환경시설 등 다수의 대형 공사가 집중 발주되면서 입찰담합도 대거 발생. 대형 및 중견 건설기업 72개사가 동시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되었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았음.
- 장기 침체에 있는 건설경기를 감안할 때 막대한 과징금은 직접적으로 재무구조를 악화시켜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로 인한 공공공사 참여 불가와 이에 따른 해외건설공사 등 기업의 대외적 신뢰도 저하는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 입찰담합 제재에 대한 특별 조치의 필요성

- 우리 경제는 대외적으로는 그리스 재정 위기에 따른 유로존의 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엔저 현상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대내적으로는 수출 증가율이 6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등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메르스에 따른 후폭풍과 최고치를 경신한 가계대출은 소비여력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음.
- 최근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이러한 배경하에 있음. 여야의 시각 차로 확정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10%의 사회간접자본(SOC) 추경 편성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추경 편성이 주요 건설기업들이 현재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각종 제재로 인해 경영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불확실함. 건설기업들이 받고 있는 각종 제재들은 정부의 자본적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목적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특히, 국가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해외건설에 있어 전체 해외 수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기업들의 대부분이 입찰담합에 따른 제재를 받고 있어 최근 누적 7,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호조세에 있는 해외건설에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됨.

■ 특별 조치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 입찰담합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함. 그러나 수주 산업의 특성상 모든 공공공사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건설산업 전체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큼.
- 건설기업의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건설경기 위축의 장기화가 향후 경기부양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한 특별조치가 필요함.
 - 경기부양에 있어 건설산업에 족쇄를 채웠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에 대하여 2000년, 2006년, 그리고 2012년에 특별사면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이번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사면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별사면이 어렵다면 2015년 말부터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게 될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에 대하여 대폭적인 감면이나 유예를 검토해볼만 함.
- 또한, 올해 들어서도 입찰담합이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건설산업의 위축을 장기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 향후 조사 건에 대하여는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시행한 것과 같은 소위 ‘그랜드바겐’ 즉, 일괄 조사 및 제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나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면 정부 산업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 조치에 전향적인 대책을 검토하여야 함.

김영덕(연구위원 · ydkim@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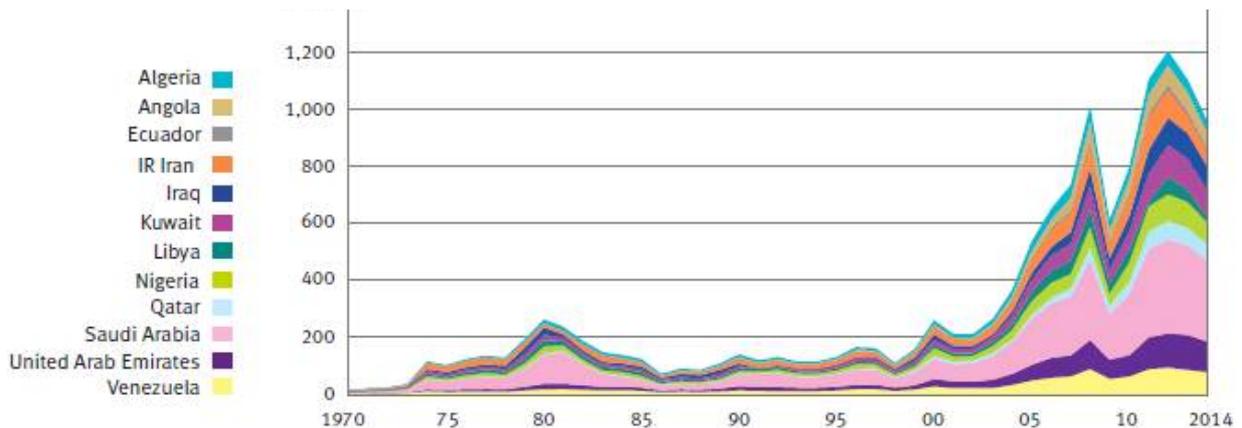
2015년 OPEC 연간 통계 보고서 분석¹⁾

- 2014년 OPEC 회원국 연간 총 석유수출액 1조 달러 하회 -

■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 하회, 최근의 유가 급락이 원인

- OPEC이 발표한 *2015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에 따르면, 2014년 OPEC 회원국의 연간 석유수출액은 9,646억 달러를 기록함.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7,942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0년 이후 연간 석유수출액이 1조 달러에 미치지 못한 것은 2014년이 처음임.
 - 또한, 2014년을 제외한 최근 3년 평균 석유수출액이 1조 1,377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유가 급락이 OPEC 회원국의 석유수출액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OPEC 회원국 석유수출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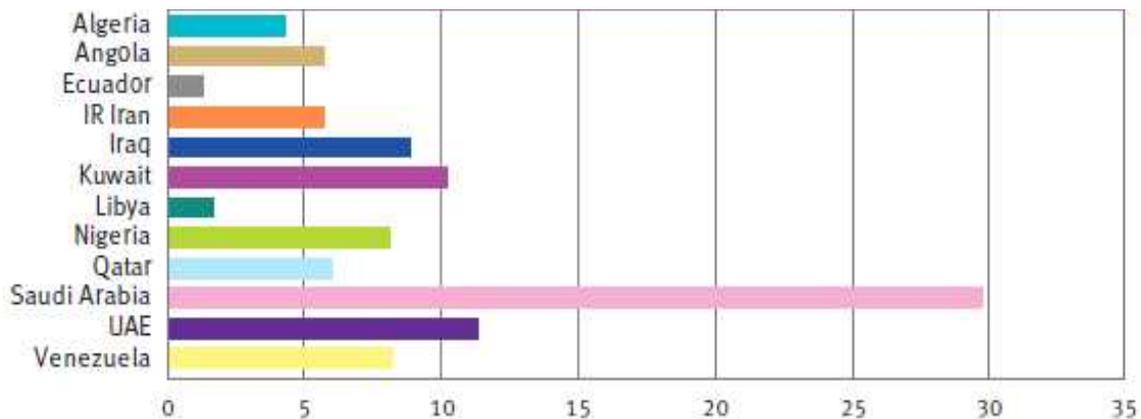
자료 : OPEC

- 2014년 석유수출액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쿠웨이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9.6%, 11.2%, 10.1%로 전체의 50.9%에 이룸.
 - 12개 OPEC 회원국 중 석유수출액이 감소하지 않은 국가는 없으며, 리비아의 경우에는 2013년 444억 달러였던 석유수출액이 2014년에는 149억 달러로 전년 대비 하락률이 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15의 일부를 요약하여 작성함.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15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했던 사우디아라비아도 2010년 이후 처음으로 3,000억 달러를 하회하는 2,851억 달러(전년 대비 9.2% 감소)를 기록하는 데 그침.

<2014년 OPEC 석유수출액 대비 국가별 비중>



자료 : OPEC

■ 이란 핵협상 타결 · 그리스 사태 장기화 등 향후 국제유가 하락 요인 많아

- 국제유가의 하락을 유인하는 직접적인 요인들인 이란 핵협상 타결과 수요를 초과하는 석유 공급 지속 외에도 그리스 사태의 장기화는 유가 하방 압력을 가중시킬 것임.
 - 당초 6월 말까지였던 이란 핵협상 마감 시일이 수차례 연장되는 진통 끝에 국제 사회와 이란이 최종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이란의 경제 정상화는 가속화될 것임. 경제제재가 해제될 경우 이란의 석유수출량은 일일 최대 120만 배럴까지 증가할 수 있어 유가 하락을 유인할 것임.
 - 지난 6월 OPEC의 월간 석유생산량은 최근 3년 간 최고치인 3,160만 배럴로 5월보다 30만 배럴이 증가해 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과잉이 지속되고 있음. 세계 일일 초과 공급량은 5월 기준 300만 배럴로 전체 공급량의 2% 수준임.
 - 3차 구제금융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사태가 안정화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정치 및 사회적 요인들이 산재해 있음. 또한 일시적으로 봉합된 그렉시트(Grexit,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으로 단기간 내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곤란함.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5월 건설수주, 전년 동월비 84.5% 증가

- 민간 건축수주 호조세로 3개월 연속 증가, 기간 대비 역대 최대치 경신 -

■ 공공 및 민간수주 모두 호조, 5월 실적으로 역대 최대치

- 5월 국내 건설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호조를 보여 전년 동월비 84.5% 증가한 12조 6,078억원을 기록함.
 - 이는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76년 이후 5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로 통상 7조~8조원대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약 4조~5조원 많은 실적임.
 - 민간 건축수주가 매우 높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공공도 토목공종을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임.

■ 공공 부문 20.9% 증가, 3개월 연속 증가세

- 5월 공공수주는 토목과 주택이 양호해 5월 실적으로는 6년 내 최대치인 2조 4,186억원을 기록함. 결국 전년 동월비 20.9%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공공 토목수주는 도로와 철도 관련 수주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 동월비 79.5% 증가한 1조 3,136억원을 기록함.
 - 주택수주는 5월 실적으로는 5년 내 최대치인 3,085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비 129.3% 증가함.
 - 비주택 건축수주의 경우 전년 동월비 29.7% 감소한 7,966억원을 기록함. 비록 전년 동월비 감소하였지만 5월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아 금액상으로는 양호함.

<2015년 5월 건설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4. 5월	6,834.5	1,999.7	731.7	1,268.0	134.5	1,133.5	4,834.8	567.0	4,267.7	2,851.7	1,416.1
2015. 5월	12,607.8	2,418.6	1,313.6	1,105.1	308.5	796.6	10,189.1	345.6	9,843.5	5,803.4	4,040.1
증감률	84.5	20.9	79.5	-12.8	129.3	-29.7	110.7	-39.0	130.6	103.5	185.3
2014. 1~5월	30,165.5	9,791.7	7,107.2	2,684.5	763.5	1,921.0	20,373.7	2,390.7	17,983.1	11,730.8	6,252.3
2015. 1~5월	46,304.7	9,566.3	6,684.1	2,882.3	1,054.2	1,828.1	36,738.4	2,915.8	33,822.5	23,269.2	10,553.3
증감률	53.5	-2.3	-6.0	7.4	38.1	-4.8	80.3	22.0	88.1	98.4	68.8

주 : 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자료 : 통계청

■ 민간 부문 110.7% 급등, 주택 및 비주택 건축수주 5월 실적으론 역대 최대치

- 5월 민간수주는 전년 동월비 110.7% 급등한 10조 1,891억원을 기록, 5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토목수주는 전년 동월비 39.0% 감소한 3,456억원으로 부진하였음.
 - 주택수주의 경우 5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5조 8,034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비 103.5% 급등함. 수도권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신규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지방에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됨.
 - 비주택 건축수주의 경우 오피스 등 상업용 건축물의 증가로 전년 동월비 185.3% 급등한 4조 401억원을 기록, 역시 5월 실적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건축은 기타 제외하고 모두 증가, 토목은 토지조성 및 기계설치 제외하고 대부분 양호

- 건축공종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고 모두 양호함.
 - 주택수주는 민간과 공공 모두 양호해 전년 동월비 104.7% 증가함.
 -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등은 각각 전년 동월비 125.5%, 26.7%, 335.6% 증가해 양호한 모습을 보임.
- 토목공종의 경우 토지조성과 기계설치를 제외하고 대부분 양호함.
 - 토지조성과 기계설치 수주는 각각 전년 동월비 72.0%, 35.5% 감소해 부진하였음.
 - 도로 및 교량 수주는 전년 동월비 30.3% 증가하였으며, 철도 및 궤도 수주도 중앙선 복선전철 수주로 인해 실적이 양호한 가운데 기저효과 영향으로 5,191.0% 급등함.
 - 항만·공항과 발전 및 송전 수주는 각각 123.4%, 519.7% 증가해 양호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항만 및 공항	토지 조성	발전 및 송전	기계 설치
2015. 5월	6,111.9	2,373.7	327.4	1,592.8	542.8	318.4	471.0	175.1	100.8	236.9	211.4
증감률	104.7	125.5	26.7	335.6	-37.8	30.3	5,191.0	123.4	-72.0	519.7	-35.5
2015. 1~5월	24,323.4	6,685.4	1,671.6	2,984.2	1,040.2	1,396.6	2,336.9	441.0	904.6	1,310.9	2,092.9
증감률	94.7	61.9	18.7	93.1	-4.7	-58.9	45.9	44.6	-2.8	5.5	110.5

자료 : 통계청

박철한(책임연구원 · igata99@cerik.re.kr)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7. 16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안전본부 주최, ‘총괄건설정책자문단 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실장 참여 - 서울시 건설정책 추진 방향 논의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주최, ‘제5차 조정소위원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이영환 연구위원 참여 - 분쟁 조정 논의 등
7. 17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정책국 주최, ‘소규모 복합공사 제출의견 검토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최민수 실장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에 건설관리연구실 유위성 연구위원 참여

■ 주요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이슈포커스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는 지난 1970년 「예산회계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공공사업의 부정당업자에게 행하는 행정 제재로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음. -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로는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3항),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과 「공공기관운영법」(제39조 제2항), 「지방공기업법」(제64조의 2) 등이 있음. •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를 명시한 법률 간의 연동적인 규정들로 인해 사실상 효력범위가 모든 공공공사 입찰 참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데까지 미치고 있음.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 공기업의 경우 각각 단체의 장이 해당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의 효력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모든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함. • 2014년부터 올해까지 집중적으로 적발된 공공공사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다수의 대형 및 중견 건설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됨. •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법률적인 측면의 논쟁뿐만 아니라 산업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음. - 현행법상 위임 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거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며, 형사상 확정 판결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처벌을 가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측면도 있음. 또한, 다른 법령들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가계약법」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중복 제재의 우려를 낳을 수 있음. - 또한, 최근 건설경기가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 전체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대형 및 중견 등 주요 건설업체들의 입찰 참가 배제는 공공공사의 유효 경쟁 저해라는 문제를 유발. 국내를 넘어 해외건설 수주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경제살리기 해법, 절박감이 없다

메르스 여파가 크다. 가뜩이나 좋지 않던 경제가 더욱 주저앉았다. 정부는 약 11조 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원만한 집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외환위기 때는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당시에는 갑작스런 충격으로 위기감이 높았으며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지금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면서 도무지 위기의식이란 것이 없다. 여야 정치권, 정부, 국민 모두 죽기 살기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도 없다.

당정은 추경의 적정한 규모와 용도에 합의해야 한다. 규모는 경제의 흐름을 뒤바꾸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하고, 여기저기 푼돈으로 쓰이기보다 건설과 설비 등의 고정자본 투자, 연구개발(R&D) 투자와 같이 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키울 수 있는 생산적 지출에 치중해야 한다.

건설 입장에서는 자연재해 예방시설 확충이나 노후 시설물 대체 및 보완 등에 대한 투자는 미래세대의 안전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지출이므로 세금을 앞당겨 쓰는 추경 성격에 부합된다. 정부가 정책적 또는 재정적으로 약간의 마중물만 마련해주면 몇 배의 효과가 나타날 민간 투자제도의 적극 활용도 검토할 만하다.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은 건설 부문의 생산 및 고용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시행된 바 있다.

공공은 한계가 있다. 민간이 보완해야 한다. 특히 내수가 그러하다. 공공에서 세제 혜택이 됐든 제도 개선이 됐든 민간이 투자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기업은 분위기만 조성되면 조직적으로 또 규모 있게 미래 수익창출을 위한 의사결정에 나설 것이다.

문제는 일반 국민이다. 개개인으로는 규모도 작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연하다. 국가에서 정확한 방향성을 잡아줘야 역량이 결집될 수 있다. 지난 5월의 관광주간 선포와 같이 여행을 권장할 수도 있고 ‘쿡방’과 ‘떡방’이 유행인 요즘에는 외식의 날을 정해 매식(買食)을 권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계층에 따라 호응할 수 있는 정도는 다 다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청년실업과 양극화시대에 위화감만 조성하는 엉뚱한 정책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수 진작이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살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취약층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론 메르스 사태로 당장에 고통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돕는 길도 된다. 지금은 경제재난 상황이다. 서로 ‘마이 불’을 외치며 책임을 다해야 희생의 빛이 보일 수 있다. 정부, 국회, 기업, 가게들이 주어진 제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한다. <아시아경제, 2015. 7. 10>

김흥수(원장 · infra@cerik.re.kr)